

신나게 놀자! 함께 어울리자! 새롭게 생각하자!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 희망 유아 진단평가 안내

담당 : 유아특수
(☎ 031-364-260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유아에게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및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유아는 진단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을 일정을 참고하시어 진단평가 신청 및 정보공개 동의서[붙임1]를 **5월 1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단·평가 대상

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유아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및 신규 희망자)**

- 1) 복지카드 미소지 유아 (복지카드 노전증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는 미소지로 간주)
- 2) 복지카드 경증 (4~6급) 유아

※ 복지카드 중증(1~3급) 소지 유아는 담임교사(학부모)의 적응행동검사와 관찰평가로 진단평가 대체함

2. 운영기간 및 시간

대상	진단평가일	진단평가 시간	진단평가 대상	비고
초등학교 입학 희망 유아	6. 16.(월)	① 10:10~11:10 ② 11:10~12:10 ③ 12:10~13:10 ④ 13:10~14:10	▶ 복지카드 미소지 유아 (복지카드 노전증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는 미소지로 간주)	• 유아 1명당 1시간 소요
	6. 20.(금)			
	6. 27.(금)			
	6. 30.(월)			
	7. 1.(화)	▶ 복지카드 경증 (4~6급) 소지 유아	• 가능한 날짜 모두 신청	
	7. 4.(금)			
	7. 7.(월)			
	7. 11.(금)			
	7. 16.(수)			
7. 21.(월)				

3. 유의사항

가. 학부모 상담을 위하여 진단평가 시 **학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나. 진단평가 신청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5월 19일(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 배곧새봄유치원 유아: 담임교사에게 제출

- 어린이집 또는 가정보육 유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psh1171@korea.kr)

다. **1년 이내에 병원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병원의 검사결과, 진단서 등이나 센터의 평가 보고서를 진단평가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 **담임교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치료 센터 평가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 가능)**

다. **진단평가일은 학부모님과 유선통화로 조율한 후 최종 결정**되며, 이후 유아의 소속기관에 통보·확인합니다.

2025. 05. 13.

배곧새봄유치원장

[붙임1]

진단평가 신청 및 정보공개 동의서

소 속	유치원(어린이집)
유 아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복지카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보호자 연락처	

진단평가 일자 및 시간					
6. 16.(월)	6. 20.(금)	6. 27.(금)	6. 30.(월)	7. 1.(화)	7. 4.(금)
10:10~11:10 <input type="checkbox"/>					
11:10~12:10 <input type="checkbox"/>					
12:10~13:10 <input type="checkbox"/>					
13:10~14:10 <input type="checkbox"/>					
7. 7.(월)	7. 11.(금)	7. 16(수)	7. 21.(월)	※가능한 날짜 모두 신청	
10:10~11:10 <input type="checkbox"/>	10:10~11:10 <input type="checkbox"/>	10:10~11:10 <input type="checkbox"/>	10:10~11:10 <input type="checkbox"/>		
11:10~12:10 <input type="checkbox"/>	11:10~12:10 <input type="checkbox"/>	11:10~12:10 <input type="checkbox"/>	11:10~12:10 <input type="checkbox"/>		
12:10~13:10 <input type="checkbox"/>	12:10~13:10 <input type="checkbox"/>	12:10~13:10 <input type="checkbox"/>	12:10~13:10 <input type="checkbox"/>		
13:10~14:10 <input type="checkbox"/>	13:10~14:10 <input type="checkbox"/>	13:10~14:10 <input type="checkbox"/>	13:10~14:10 <input type="checkbox"/>		

※ 진단평가 일정이 겹치는 유아가 많을 경우 희망 일자와 달라질 수 있음

<p>본인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26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담당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p>	
<p>1. 수집이용목적 : 2026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2.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소속, 이름, 학년,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성별, 주소 ■ 민감정보 : 복지카드 장애유형 및 등급, 발육 및 건강상태, 학업성취수준, 행동특성 및 요인, 사회생활적응능력, 의사진단서 등 3. 이용 및 보유기간 : 2026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 종료 시(2026.2.28.) 까지 4. 제공기관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2026 초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여부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 _____ (인)

유아와의 관계 : _____

2025년 월 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제16조)

* 선정·배치 절차

<p>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p>⇩</p>	
<p>2) 접수 및 진단평가 회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p>⇩</p>	
<p>3) 진단평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p>⇩</p>	
<p>4) 진단평가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p>⇩</p>	
<p>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법 제15조 제2항)
<p>⇩</p>	
<p>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법 제17조 제1항)

